

의안번호	2217344
의 퇴 인	이광희의원
회 답 일	2026.3.25.
추계번호	26B138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선별시설 등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함 (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자동화 선별시설 등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216억 2,600만원임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10개소의 전처리시설이 설치·운영 예정임 (운영 중 4개소, 설치 중 4개소, 신규 추진 2개소)

[표 1] 전처리시설 설치 현황 (2026년 기준)

(단위: 억원)

연도	운영 중(4)				설치 중(4)				추진 예정(2)	
지자체	동해	속초	영월	고성	성주	청도	단양	영양	문경	장수
설치기간	'18~'20	'23~'25	'23~'25	'24	'22~'26	'24~'26	'25~'26	'25~'27	'26~'27	'26~'27
운영시기	'20.9	'25.12	'25.10	'25.1	—	—	—	—	—	—
용량 (톤/일)	130	130	50	30	40	30	70	17	90	20
총사업비 (국고)	78 (22.5)	28 (14)	28 (14)	14 (9.8)	42.5 (19.2)	40.8 (20.4)	101.7 (50.9)	20.9 (10.5)	115.2 (57.6)	62.8 (31.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재 전처리시설의 설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어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전처리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1일 기준 종량제봉투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산출하였을 때, 전처리시설의 설치비는 1개소당 125억 4,600만원, 운영비는 연 16억 4,200만원으로 추정됨
- (설치비) 102톤/일(종량제봉투 평균 배출량)×123백만원/톤¹⁾
- (운영비) 102톤/일(종량제봉투 평균 배출량)×16.1백만원/년²⁾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자동화 선별시설의 종류 및 생활 폐기물의 소각·매립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동화 선별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폐기물의 소각·매립 수요도 현시점에서는 특정할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에는 한계가 있음

1)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표준공사비에 따르면, 1일 기준 배출량이 90톤을 초과할 경우 설치비용은 톤 당 1억 2,300만원임

2) 현재 운영 중인 동해시 전처리시설 운영비를 기준으로 운영비 단가를 산정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